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3 선고 2019가단52047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12,898,429원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898,42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소외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2. 6. 27. 중고차할부론약정을 체결하면서 E의 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지연배상금은 E이 정하는 비율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D는 위 중고차할부론약정에 따른 원리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9. 16.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를 D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336267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13. 'D는 원고에게 9,731,267원과 그 중 6,390,350원에 대하여 2016.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라. D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9. 15.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4. 9. 2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0437호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2017. 2. 27. 그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소 제기일 무렵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액인 12,898,429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D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D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 구입대금은 전액 피고가 출자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D는 관여하지 않은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를 해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책임재산에 속한다 할지라도, 민법 제406조에서 정하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바(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인 D가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조 일반철골조

면 적 제1층 호 52.55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장용지 2757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2757 분의 15.911